



취업 및 진로지도위원회 규정

제정일	1988. 3. 1
개정일	2019. 4. 1
개정차수	9차
담당부서	DU일자리센터

- 제 1조 (명칭) 본 위원회는 동서울대학교 취업 및 진로지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- 제 2조 (목적) 본 위원회는 취업 및 진로지도, 부직(아르바이트) 알선, 취업 관련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협의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3조 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으로 한다. (개정 2009. 2.13)
 ② 위원장은 산학취업처장이 된다. (개정 2006. 8. 1, 2014. 1. 1)
- 제 4조 (사업)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1. 취업 및 진로지도에 관한 기본방침 수립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
 2. 졸업생의 취업사항 파악과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알선 및 대책 강구
 3. 취업률 제고방안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(신설 2014. 1. 1)
 4. (삭제 2019. 4. 1)
 5. 재학생의 부직(아르바이트) 선정 (개정 2014. 1. 1)
 6. 기타 취업 관련사항
- 제 5조 (회의)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 6조 (위원회의 사무관장) 위원회의 제반 사무는 산학취업처 DU일자리센터에서 관장한다. (개정 2006. 8. 1, 2014. 1. 1, 2014.11. 1, 2018. 4. 1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